

건축과 일조권

자유기고가 김춘겸

토목이나 건축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이 건설업(建設業)이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주택·사무실·공장·창고·송배전선로·도로·교량·하천·항만 등이 포함되며, 사업의 성질상 이들 건설수요는 경제 및 재정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의 총칭이 건설기계(建設機械)인데, 기계동력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값이 싼 양질의 공사를 시공하는 일을 기계화 시공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력시공으로는 불가능한 공사도 할 수 있고, 공사단가를 인하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기를 단축하는 외에 구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균일화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건설기계는 토목공사용·기초공사용·암석공사용·콘크리트공사용·포장공사용 및 작업용 선박이나 크레인(Crane : 기중기) 등으로 대별된다. 최근에는 특히 대형 공사규모의 확대에 따라 각종 기계와 설비의 대형화가 추진되는 동시에 특수한 용도와 목적의 기계도 개발되고 있다.

BC 1세기경에 로마의 비트루비우스가 쓴 건축기술에 관한 책이 있는데 이것이 《건축십서(建築十書)》인데 전부 10권으로 되어 있다. 건축·토목·기계 등에 광범위하게 걸친 풍부한 내용은 고대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그후 르네상스 건축에 큰 영향을 주었다. 건축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구축물(構築物) 중, 주로 건물의 공간과 생활의 관계를 만드는 기술, 사회적 재화, 그 사용가치, 미적가치 등을 포함한 넓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건축은 부분적 그리고 연속적인 여러 기술을 이르는데, 이를테면 목수·미장이·석공 등의 기술을 통괄하는 종합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건물이나 도시건설 등 생활공간 전체를 구상해서 설계하는 전체적이고 지도적 기술의 의의를 이미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시민혁명 이후의 사회에서는 시민 생활의 물적 환경형성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기술로 생각되어 왔다. 이 때문에, 건축(architecture)과 건물(building)은 다른개념으로 다루어졌다.

19세기 말부터 현대까지 건축은 그 양식을 문체삼는 것이 아니라, 조형의 사상을 찾아 근대예술운동의 일익을 담당해서 근대건축을 만들어 왔다. 건축은 그 기술이 항상 인간생활의 상대와 관계되는 점을 중시하면서, 고도의 공업화와 산업화 사회에 적응하는 길을 찾는 동시에 문화유산의 보전기술도 또한 중시하고 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인류의 생활에 필요한 건축공



간의 조형과 그 조형기술을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문을 건축학이라고 하는데 들뜬 생활공간의 미학(美學)과 공학적인 기술의 관계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논리와 이론의 추구가 근대건축학의 과제로 되어 있다.

건축학에서는 건축설계와 제도에 의한 표현이 매우 중요하며 또 연구교육면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건축술은 고대부터 있었으나, 근대건축학은 시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더불어 발전했다. 그 시초는 18세기의 프랑스에서 확립되었으나, 많은 전문분야로 구성되는 실질적인 학문체계를 이루게 된 것은 최근의 20세기 후반에서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은 우리인류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건축행위, 또는 건축물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이 현대의 추세이다. 이러한 건축규제(建築規制)는 도시계획면에서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규제, 건물의 용도·규모·구조를 제한하는 규제, 건축물의 안전이나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하여 건축의 형태, 인가(隣家)와의 간격, 높이 등을 제한하는 규제, 일조권의 문제, 소음, 방재상(防災上)의 배려에서 건물 내부에 방재설비와 대피시설의 설치의무 등, 오히려 최근에는 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

태양광선이 구름이나 안개로 가려지지 않고 지상을 비치는 일이 일조(日照)라고 한다. 특히 응달과 양달에 관련해서 말할 때 일조라고 하며, 직사광선의 열적인 작용을 문제삼을 때는 일사(日射)라고 말한다. 일조는 태양의 운행에 따라 세기나 방향 등이 변화한다.

또 위도·지형·날씨 등에 따라 각 지역마다 일조시간에 차이가 있다. 건축에서도, 특히 주거에서 또는 사무실에서의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 중고층 건물의 그늘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일조계(日照計)는 일조시간을 기록하는 장치이다. 청사진의 감광지를 작은 구멍이 뚫린 원통에 넣고, 구멍을 통해서 태양광이 들어온 곳만 감광하는 것을 이용하는 조던 일조계와 캠벌-스톡 일조계가 있다. 햇볕 쬐는 것을 방해받음으로써 받게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로부터 수호되어야 할 법적보장 내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일조권(日照權)은 최근 고층건물의 증가로 소송문제가 되는 일도 많으며 주로 판례에 따라 확인되고 있다.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은 장해에는 상황에 따라서 건축의 중지, 건축물의 개선이나 제거를 요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도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지도에 의해 일조분쟁(日照紛爭)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정하고 있다. 분쟁 해결의 근거로 건축법 기타의 법령에 의해 일조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도 주장되고 있다.

주택·공장·사무실 등의 건축활동에서 볼 수 있는 17~18년 주기의 건축경기 순환운동이 건축순환(建築循環)이다. 약 10년 주기의 주순환과 건축순환 국면의 조합으로, 미국의 호황과 불황의 변동이 A.H. 한센에 의해 설명된데서 생긴 말이다. **표준**